##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008

발의연월일: 2022. 12. 19.

발 의 자:임종성・유의동・홍성국

장철민 · 임호선 · 변재일

민병덕 · 안규백 · 소병훈

김승남 • 한정애 의원

(1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하여 탄소흡수원인 산림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산림청은 2050년까지 2,670만톤의 탄소를 줄이는 '산림부문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마련하였음.

이처럼 탄소중립 달성과 산림의 탄소흡수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림, 숲가꾸기, 임목생산 등 전반적인 산림경영 활동에 대한 시공간 이력정보와 산림탄소량 계산을 위한 활동자료의 연계가 필요하지만, 국유림과 달리 시·군 단위 공·사유림의 경우 조림 및 숲가꾸기 등의 시공간 이력정보가 산림정보체계에 연계되지 않아 산림탄소흡수원의 자료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 작성 등에 필요한 자료를 산림청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산림경영 활

동의 시공간 이력정보가 수집·보유·관리·분석·공유될 수 있도록 '탄소흡수원 정보체계'를 '산림탄소 통합정보체계'로 확대함으로써 정 확한 탄소흡수량 산정체계를 마련하여 산림의 탄소 흡수기능을 유지 ·증진시키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3항, 제8조제4항 및 제37조의2제1호 신설).

#### 법률 제 호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탄소흡수원 정보 체계"를 "관리하고, 산림경영 활동에 대한 시공간 이력정보를 수집·보유·관리·분석·공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탄소 통합정보체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 작성과 산림탄소 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의 작성과 제 2항에 따른 산림탄소 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을 전문 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제37조의2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8조제4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의 임원 및 직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아 정 제8조(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 제8조(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 의 작성) ① (생 략) 의 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② ------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를 체 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 -----관리하고, 산림경영 활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에 대한 시공간 이력정보를 탄소흡수원 정보 체계를 구축 수집 • 보유 • 관리 • 분석 • 공유 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산림탄소 통합 정보체계-----③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탄소흡수 장에게 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 원 정보 및 통계 작성과 산림 계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탄소 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료를 산림청장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 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

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의 작성과 제2항에 따른 산림탄소

라야 한다.

<신 설>

④ (생략)

제3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제3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 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 로 본다.

<신 설>

- 1. (생략)
- 2. (생 략)

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을 전 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의제) -----

----.

- 1. 제8조제4항에 따라 산림청장 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임원 및 직원 1의2. (현행 제1호와 같음)
- 2. (현행과 같음)